의안번호	5122
의 결 연 월 일	2026. . . (제 회)

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

발 의 의 원	이순열 의원 외 10 명
발의연월일	2026년 09월 18일

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

(이순열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5122

발 의 년 월 일 : 2026년 09월 18일
발 의 의 원 : 이순열, 강해정, 곽효정, 김동호, 김창연, 노종용, 박병남, 손인수, 안신일, 유인호, 윤성규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○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장기 가뭄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선제적인 물재해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.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총강수량의 절반 이상(약 54%)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, 기후위기로 인한 수자원 변동성과 물관리 취약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.

○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지속적인 개발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. 2012년 시 출범 당시 약 12.4%였던 불투수면적률은 생활권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(2025년 기준 12.99%).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빗물의 표면 유출량을 급증시켜 도심 침수 위험을 높이고, 평상시에는 지하수 고갈과 수질 악화, 하천 건천화 등 자연적인 물순환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음.

○ 기후위기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 왜곡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대응을 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임. 「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 등 국가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추어, 세종시 역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물순환 촉진 체계를 구축해야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종합적인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뭄 · 홍수 등 재해 취약 지역을 ‘물순환 집중관리지역’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 (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7조)

나. 기본계획 수립 및 촉진구역 지정 등을 자문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물순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8조)

다. 관내 개발사업 시 저영향개발계획 수립과 기법 설치를 권장하고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. (안 제12조, 안 제13조, 안 제14조)

라. 오염원인자의 회복 노력을 지원하고 물관리 연구 · 교육 · 홍보 사업 등 물문화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15조, 안 제16조)

마. 물문화 육성 및 물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기관,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물관리기본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(붙임 1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(붙임 2)

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

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가뭄·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,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물순환 촉진 시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물순환”이란 「물관리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.
2. “물관리”란 「물관리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.
3. “물순환 촉진”이란 「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물순환촉진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을 말한다.
4. “저영향개발기법”이란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 책무) ① 세종특별자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세종특별자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사회적·환경적 특성에 맞는 물순환 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② 시장은 물순환 촉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근 지방자치단체

나 관련 기관·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이 시의 지속가능한 물순환 촉진 시책에 참여·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물순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2장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1. 물순환 촉진의 기본 목표 및 정책의 기본 방향
2. 그동안의 정책 성과평가, 물관리 여건 변화 및 전망
3. 「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물순환촉진법 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
4. 물이용 효율화, 물재해 위험 완화 및 물환경 개선을 위한 부문별 물순환 촉진 시책
5. 기후변화에 따른 시의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
6. 「물관리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물문화의 육성 및 같은 법 제40조

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시장이 물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기관, 전문가,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

제6조(다른 계획과의 관계)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계획이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7조(물순환 집중 관리지역 지정) 시장은 물순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물순환 왜곡 및 물이용·물재해·물환경 분야가 취약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물순환 집중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

2. 수자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·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

4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지구가 속한 표준유역 내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지역

6. 그 밖에 시장이 시범 사업이나 시책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
제3장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위원회

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물순환촉진법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
3. 제7조에 따른 물순환 집중 관리지역에 관한 사항
4. 물문화 육성, 물관리 지원 및 물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물순환 촉진을 위해 자문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(세종특별자치시청 소속 공무원)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촉직

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어야 한다.

1.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·국장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
가.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원

나. 물순환 및 물관리 분야 전문가

다. 관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주민대표로서 물환경, 환경보전, 마을공동체,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

라. 그 밖에 시장이 전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시장은 제3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적격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(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)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·연구·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는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다.

1.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
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 제출의 요청은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4장 저영향개발 및 물문화 육성 등

제12조(저영향개발계획의 수립 권장) 시장은 시 관할 구역 내 개발사업의 사업자에게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개발계획(이하 “저영향개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13조(저영향개발 사전협의) ① 시장은 개발사업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및 우수유출 증가로 인한 물환경 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(이하 “사전협의”라 한다)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의 사업자에게 저영향개발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 등 물순환 건전성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.

제14조(저영향개발기법 설치 권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 등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 1,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2. 「건축법」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

3. 그 밖에 시장이 물순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

제15조(오염원인자의 물순환 회복 노력 및 지원) 시장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오염원인의 책임을 지는 자가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 등을 통해 시의 강우유출수 저감과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물문화 육성 및 물관리 지원) ① 시장은 물순환 촉진 등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물문화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물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기술개발, 물관리 국제협력,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,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, 시민 교육 및 홍보 등 물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「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물순환 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·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7조(협력체계) 시장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민단체·학교·기관·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☑ 「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물순환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·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순환 촉진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☑ 「물관리기본법」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물관리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,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

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.

제9조(건전한 물순환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이 순환과정에서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고, 국민생활 및 산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☑ **「물환경보전법」**

제53조의5(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(이하 “종합대책”이라 한다)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
2.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
3. 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
4.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

가. 시·도별,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(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한다)

나. 시·도별, 소권역별 물순환율(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,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말한다)

5.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
6. 그 밖에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

항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⑦ 제2항제4호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